

原價計算報告書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
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

2015. 11.



창 원 경 레 공 단

원 가 계 산 보 고 서

용역명 :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
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

◎ 제 출 서 : 원가계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서명 · 날인하여 제출합니다.

2015. 11.

직 책	성 명
책 임 연 구 원	오 장 석 (인)
연 구 원	박 지 혜 (인)

(사) 경 남 경 영 경 제 연 구 원
Kyungnam Management & Economics Research Institute

목 차

1. 예 정 원 가 계 산 보 고 서 (본 문)	1
2. 조 사 개 요	2
◎ 창 원 경 률 공 단 (본 장) 원 가 계 산 서	3
◎ 창 원 경 률 공 단 (김 해 지 점) 원 가 계 산 서	26
◎ 근 거 자 료	43
◎ 원 가 계 산 용 역 기 관	-

1. 예정원가계산보고서 (본문)

창원경륜공단 귀하

귀 창원경륜공단에서 의뢰하신 건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산출한 원가계산 결과금액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< 아 래 >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수 량	단 가	총 금액	비 고
창원경륜공단	본장	개월	12	₩65,065,000	₩780,780,000	부가가치세 포함
	김해지점	개월	12	₩11,176,000	₩134,112,000	
총 용역비					₩914,892,000	

(사) 경남경영경제연구원

Kyungnam Management & Economics Research Institute

2. 원가계산의 개요

1. 원가계산의 목적

본 원가계산은 창원경륜공단으로부터 위촉받아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대한 소요비용 적정원가를 조사·분석·회보함으로서 귀 창원경륜공단의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원가계산의 방법

본 원가계산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(2015. 10. 1)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산정하였다.

3. 인건비

인건비의 작업일수 및 시간은 작업시방서와 전문 용역업체의 인원배치현황을 참고하였으며, 2015년도 직종별임금에 의거하여 노임단가를 적용 계산하였다.

4. 경비

경비는 비목별로 감가상각비, 보험료, 복리후생비, 내·외벽 및 바닥청소비 등을 말하며,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을 적용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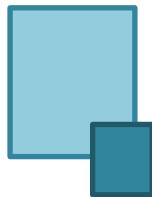
5. 일반관리비 및 이윤

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청소용역 해당비율 5%이내, 10%이내를 각각 적용 산출하였다.

6. 원가계산의 결론

본 원가계산의 결론은 첨부된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양에 의거 제 자료 및 현행 용역업체의 현황을 참고하여 추정산출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.

- 가) 용역 시방서의 변동
- 나) 인원의 변동
- 다) 업무여건의 변동
- 라) 기타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의 변동



총괄 원가계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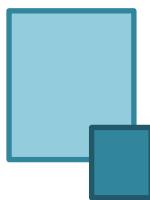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

I . 총괄 위탁비 원가계산서

[표 1]

(단위 : 원/년)

비 목		구 分	단 위	수 량	본장	김해지점
순 원 가 비	노 무 비	직 접 노 무 비	개월	12	₩559,485,924	₩98,584,920
		간 접 노 무 비	개월	12	₩0	₩0
		소 계	개월	12	₩559,485,924	₩98,584,920
	경 비	감 가 상 각 비	개월	12	₩180,336	₩0
		보 험 료	개월	12	₩53,870,460	₩9,492,300
		복 리 후 생 비	개월	12	₩32,436,948	₩5,933,964
		유리청소 및 바닥왁스작업비	개월	12	₩17,477,952	₩0
		소 계	개월	12	₩103,965,696	₩15,426,264
	순 원 가		개월	12	₩663,451,620	₩114,011,184
	일 반 관 리 비		개월	12	₩19,903,548	₩3,420,336
	이 윤		개월	12	₩26,444,832	₩4,488,480
	총 원 가		개월	12	₩709,800,000	₩121,920,000
	부 가 가 치 세		개월	12	₩70,980,000	₩12,192,000
합 계			개월	12	₩780,780,000	₩134,112,000



본장부문 원가계산서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

I. 년간 위탁비 원가계산서

[표 1]

(단위 : 원/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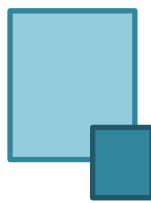
비 목		구 分	단 위	수 량	월간 위탁비	연간 위탁비
순 원 가 비	노 무 비	직 접 노 무 비	개월	12	₩46,623,827	₩559,485,924
		간 접 노 무 비	개월	12	₩0	₩0
		소 계	개월	12	₩46,623,827	₩559,485,924
	경 비	감 가 상 각 비	개월	12	₩15,028	₩180,336
		보 험 료	개월	12	₩4,489,205	₩53,870,460
		복 리 후 생 비	개월	12	₩2,703,079	₩32,436,948
		유리청소 및 바닥왁스작업비	개월	12	₩1,456,496	₩17,477,952
		소 계	개월	12	₩8,663,808	₩103,965,696
	순 원 가		개월	12	₩55,287,635	₩663,451,620
	일 반 관 리 비		개월	12	₩1,658,629	₩19,903,548
	이 윤		개월	12	₩2,203,736	₩26,444,832
	총 원 가		개월	12	₩59,150,000	₩709,800,000
	부 가 가 치 세		개월	12	₩5,915,000	₩70,980,000
합 계			개월	12	₩65,065,000	₩780,780,000

I - 1. 월간 위탁비 원가계산서

[표 1-1]

(단위 : 원/월)

비 목		구 分	금 액	구성비 (%)	비 고
노 무 비	직 접 노 무 비		₩46,623,827		
	간 접 노 무 비		₩0		
	소 계		₩46,623,827	78.82	
순 원 가	감 가 상 각 비		₩15,028		
	보 험 료		₩4,489,205		
	복 리 후 생 비		₩2,703,079		
	유리청소 및 바닥왁스 작업비		₩1,456,496		
	소 계		₩8,663,808	14.65	
순 원 가			₩55,287,635	93.47	노무비+경비
일 반 관 리 비			₩1,658,629	2.80	순원가×3%
이 윤			₩2,203,736	3.73	(순원가+일반관리비)×3.86%
총 원 가			₩59,150,000	100	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
부 가 가 치 세			₩5,915,000		총원가×10%
합 계			₩65,065,000		총원가+부가가치세



노무비 집계표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

II. 노 무 비 집 계 표

[표 2]

(단위 : 원)

비 목 구 분	직접노무비	간접노무비	합 계
1. 직접노무비	₩46,623,827	₩0	₩46,623,827
2. 간접노무비(불인정)	₩0	₩0	₩0
합 계	₩46,623,827	₩0	₩46,623,827

1. 직접노무비 산출명세서

[부표 1]

(단위 : 원)

직 종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비 고
소 장	인	1	₩2,274,500	₩2,274,500	
남미화원	조기출근	인	3	₩1,866,365	₩5,599,095
	사무동, 선수동근무자	인	1	₩1,719,168	₩1,719,168
여미화원	상근	인	8	₩1,615,798	₩12,926,384
	상근 (조기출근자)	인	3	₩1,757,078	₩5,271,234
	상근 (사무동,선수동 근무자)	인	2	₩1,641,417	₩3,282,834
	비상근	인	11	₩1,413,692	₩15,550,612
소 계	인	29		₩46,623,827	

주) 청소인원 29인 기준시 적용금액(월기준)

1-1. 소장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1-1]

(단위 : 원)

구 分		단 위	수 량	단 가 (시급)	금 액	비 고
기 본 급	기 본 급	시간	148.75	₩10,149	₩1,509,664	*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30.5	₩10,149	₩309,545	*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	소 계				₩1,819,209	
제 수 당	연 차 수 당	시간	8.75	₩10,149	₩88,804	* $(7\text{시간} \times 15\text{일}) \div 12\text{개월} = 8.75\text{시간}$ *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특별작업수당	%	10.0	₩1,819,209	₩181,921	*장비운전 특별작업수당 적용
	연장근로수당	시간	0.0	₩15,224	₩0	*단가: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805	₩15,224	₩12,255	*단가: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 계				₩282,980	
상 여 금	%	0.0	₩151,601	₩0	₩0	*단가:기본급 ÷ 12개월
퇴직급여총당금				₩172,311	₩0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 × 12개월 ÷ 366일 × 30일 ÷ 12개월
월 평균인건비					₩2,274,500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 총당금

비고)

■ 실 근로시간

- ① 수~목요일 : 8시간(10:00~18:00) –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 ② 금~일요일 : 8시간(12:00~20:00) –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
■ 기본급 수량산출근거

- ① 366일 – 52일(월요일) – 52일(화요일) – 5일(수~일요일 중 명절) = 257일
 → 257일 – 2일(9/17~18(근로제외)) = 255일
 ② (255일 ÷ 12개월) × 7시간 = **148.75시간**

■ 유급휴일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(366일 ÷ 12개월 ÷ 7일) × 7시간 = **30.5시간**

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근로자의 날 및 휴일추가근무
 ② [1일(근로자의날) + 3일(6/6, 8/15, 10/3)] ÷ 2.9조교대(29인 ÷ 10인 = 2.9조) = 1.38일
 → [1.38일 ÷ 12개월] × 7시간 = **0.805시간**

1-2. 남미화원(조기출근)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1-2]

(단위 : 원)

구 分		단 위	수 량	단 가 (시급)	금 액	비 고
기 본 급	기 본 급	시간	161.417	₩8,018	₩1,294,242	*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33.114	₩8,018	₩265,508	*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	소 계				₩1,559,750	
제 수 당	연 차 수 당	시간	9.5	₩8,018	₩76,171	* $(7.6\text{시간} \times 15\text{일}) \div 12\text{개월} = 9.5\text{시간}$ *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특별작업수당	%	5	₩1,559,750	₩77,988	*장비운전 특별작업수당 적용
	연장근로수당	시간	0.0	₩12,027	₩0	*단가: 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92	₩12,027	₩11,065	*단가: 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 계				₩165,224	
상 여 금		%	0.0	₩129,979	₩0	*단가: 기본급 ÷ 12개월
퇴직급여총당금					₩141,391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 × 12개월 ÷ 366일 × 30일 ÷ 12개월
월 평균인건비					₩1,866,365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 총당금

비고)

■ 실 근로시간

- ① 수~목요일 : 8시간(10:00~18:00) -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- ② 금~일요일 : 8시간(12:30~20:30) -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- ③ 경주일(주3일) 조기출근 1시간 추가근무

■ 기본급 수량산출근거

- ① 366일 - 52일(월요일) - 52일(화요일) - 5일(수~일요일 중 명절) = 257일
→ 257일 - 2일(9/17~18(근로제외)) = 255일
- ② $(255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) \times 7\text{시간} = 148.75\text{시간}$
- ③ $(152\text{일}(금\cdot토\cdot일요일) \div 12\text{개월}) \times 1\text{시간} = 12.667\text{시간}$
- ④ 소계 : 148.75시간 + 12.667시간 = 161.417시간

■ 유급휴일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$(366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 \div 7\text{일}) \times 7.6\text{시간} = 33.114\text{시간}$

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근로자의 날 및 휴일추가근무
- ② $[1\text{일}(근로자의날) + 3\text{일}(6/6, 8/15, 10/3)] \div 2.9\text{조교대}(29\text{인} \div 10\text{인}=2.9\text{조}) = 1.38\text{일}$
→ [1.38일 ÷ 12개월] × 8시간 = 0.92시간

1-3. 남미화원(사무동, 선수동 출근)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1-3]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수 량	단 가 (시급)	금 액	비 고
기 본 급	기 본 급	시간	148.75	₩8,018	₩1,192,678	*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30.5	₩8,018	₩244,549	*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	소 계				₩1,437,227	
제 수 당	연 차 수 당	시간	8.75	₩8,018	₩70,158	*(7시간×15일)÷12개월=8.75시간 *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특별작업수당	%	5	₩1,437,227	₩71,861	*장비운전 특별작업수당 적용
	연장근로수당	시간	0.0	₩12,027	₩0	*단가:시급×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805	₩12,027	₩9,682	*단가:시급×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 계				₩151,701	
상 여 금	%	0.0	₩119,769	₩0	₩0	*단가:기본급÷12개월
퇴직급여총당금					₩130,240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×12개월 ÷366일×30일÷12개월
월 평균인건비					₩1,719,168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 총당금

비고)

■ 실 근로시간

① 수~일요일 : 8시간(08:00~16:00) –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
■ 기본급 수량산출근거

① 366일 – 52일(월요일) – 52일(화요일) – 5일(수~일요일 중 명절) = 257일

→ 257일 – 2일(9/17~18(근로제외)) = 255일

② (255일÷12개월) × 7시간 = 148.75시간

■ 유급휴일수당 수량산출근거

① (366일÷12개월÷7일) × 7시간 = 30.5시간

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

① 근로자의 날 및 휴일추가근무

② [1일(근로자의날) + 3일(6/6, 8/15, 10/3)] ÷ 2.9조교대(29인÷10인=2.9조)

→ [1.38일 ÷ 12개월] × 7시간 = 0.805시간

1-4. 미화원(상근)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1-4]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수 량	단 가 (시급)	금 액	비 고
기 본 급	기 본 급	시간	147.0	₩8,018	₩1,178,646	*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29.547	₩8,018	₩236,908	*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	소 계				₩1,415,554	
제 수 당	연 차 수 당	시간	8.5	₩8,018	₩68,153	* $(6.8\text{시간} \times 15\text{일}) \div 12\text{개월}$ =8.5시간 *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특별작업수당	%	0.0	₩1,415,554	₩0	*장비운전 특별작업수당 적용
	연장근로수당	시간	0.0	₩12,027	₩0	*단가: 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805	₩12,027	₩9,682	*단가: 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 계				₩77,835	
상 여 금		%	0.0	₩117,963	₩0	*단가: 기본급 ÷ 12개월
퇴직급여충당금					₩122,409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 × 12개월 ÷ 366일 × 30일 ÷ 12개월
월 평균 인건비					₩1,615,798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 충당금

비고)

■ 실 근로시간

- ① 수요일 : 7시간(10:00~17:00) - 1시간(휴게시간) = 6시간
- ② 목요일 : 8시간(10:00~18:00) -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- ③ 금~일요일 : 8시간(12:30~20:30) -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
■ 기본급 수량산출근거

- ① 수요일 월평균 근무시간 : $(49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) \times 6\text{시간} = 24.5\text{시간}$
- ② 366일 - 52일(월요일) - 52일(화요일) - 49일(수요일) - 3일(목~일요일 중 명절) = 210일
- ③ 목~일요일 월평균 근무시간 : $(210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) \times 7\text{시간} = 122.5\text{시간}$
- ④ 소계 : 24.5시간 + 122.5시간 = 147시간

■ 유급휴일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$(366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 \div 7\text{일}) \times 6.8\text{시간} = 29.547\text{시간}$

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근로자의 날 및 휴일추가근무
- ② $[1\text{일}(근로자의날) + 3\text{일}(6/6, 8/15, 10/3)] \div 2.9\text{조교대}(29\text{인} \div 10\text{인} = 2.9\text{조}) = 1.38\text{일}$
→ $[1.38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] \times 7\text{시간} = 0.805\text{시간}$

1-5. 미화원(조기출근자)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1-5]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수 량	단 가 (시급)	금 액	비 고
기 본 급	기 본 급	시간	159.667	₩8,018	₩1,280,210	*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32.243	₩8,018	₩258,524	*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	소 계				₩1,538,734	
제 수 당	연 차 수 당	시간	9.25	₩8,018	₩74,167	* $(7.4\text{시간} \times 15\text{일}) \div 12\text{개월} = 9.25\text{시간}$ *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특별작업수당	%	0.0	₩1,538,734	₩0	*장비운전 특별작업수당 적용
	연장근로수당	시간	0.0	₩12,027	₩0	*단가: 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92	₩12,027	₩11,065	*단가: 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 계				₩85,232	
상 여 금		%	0.0	₩128,228	₩0	*단가: 기본급 ÷ 12개월
퇴직급여총당금					₩133,112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 × 12개월 ÷ 366일 × 30일 ÷ 12개월
월 평균 인건비					₩1,757,078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 총당금

비고)

■ 실 근로시간

- ① 수요일 : 7시간(10:00~17:00) - 1시간(휴게시간) = 6시간
- ② 목요일 : 8시간(10:00~18:00) -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- ③ 금~일요일 : 8시간(12:30~20:30) -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- ④ 경주일(금~일요일) 3인 조기출근 1시간 추가근무

■ 기본급 수량산출근거

- ① 수요일 월평균 근무시간 : $(49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) \times 6\text{시간} = 24.5\text{시간}$
- ② 366일 - 52일(월요일) - 52일(화요일) - 49일(수요일) - 3일(목~일요일 중 명절) = 210일
- ③ 목~일요일 월평균 근무시간 : $(210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) \times 7\text{시간} = 122.5\text{시간}$
- ④ $(152\text{일}(금\cdot토\cdot일요일)) \div 12\text{개월} \times 1\text{시간} = 12.667\text{시간}$
- ⑤ 소계 : 24.5시간 + 122.5시간 + 12.667시간 = 159.667시간

■ 유급휴일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$(366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 \div 7\text{일}) \times 7.4\text{시간} = 32.243\text{시간}$

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근로자의 날 및 휴일추가근무
- ② $[1\text{일}(근로자의날) + 3\text{일}(6/6, 8/15, 10/3)] \div 2.9\text{조교대}(29\text{인} \div 10\text{인}=2.9\text{조}) = 1.38\text{일}$
→ $[1.38\text{일} \div 12\text{개월}] \times 8\text{시간} = 0.92\text{시간}$

1-6. 미화원(사무동, 선수동 근무자)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1-6]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수 량	단 가 (시급)	금 액	비 고
기 본 급	기 본 급	시간	148.75	₩8,018	₩1,192,678	*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30.5	₩8,018	₩244,549	*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	소 계				₩1,437,227	
제 수 당	연 차 수 당	시간	8.75	₩8,018	₩70,158	* $(7시간 \times 15일) \div 12개월 = 8.75시간$ *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특별작업수당	%	0.0	₩1,437,227	₩0	*장비운전 특별작업수당 적용
	연장근로수당	시간	0.0	₩12,027	₩0	*단가: 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805	₩12,027	₩9,682	*단가: 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 계				₩79,840	
상 여 금		%	0.0	₩119,769	₩0	*단가: 기본급 ÷ 12개월
퇴직급여총당금					₩124,350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 × 12개월 ÷ 366일 × 30일 ÷ 12개월
월 평균 인건비					₩1,641,417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총당금

비고)

■ 실 근로시간

- ① 수~일요일 : 8시간(08:00~16:00) –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
■ 기본급 수량산출근거

- ① 366일 – 52일(월요일) – 52일(화요일) – 5일(수~일요일 중 명절) = 257일
→ 257일 – 2일(9/17~18(근로제외)) = 255일
② $(255일 \div 12개월) \times 7시간 = 148.75시간$

■ 유급휴일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$(366일 \div 12개월 \div 7일) \times 7시간 = 30.5시간$

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근로자의 날 및 휴일추가근무
② $[1일(근로자의날) + 3일(6/6, 8/15, 10/3)] \div 2.9조교대(29인 \div 10인 = 2.9조)$ = 1.38일
→ $[1.38일 \div 12개월] \times 7시간 = 0.805시간$

1-7. 미화원(비상근)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1-7]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수 량	단 가 (시급)	금 액	비 고
기 본 급	기 본 급	시간	122.5	₩8,018	₩982,205	*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30.5	₩8,018	₩244,549	*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	소 계				₩1,226,754	
제 수 당	연 차 수 당	시간	8.75	₩8,018	₩70,158	* $(7시간 \times 15일) \div 12개월 = 8.75시간$ *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특별작업수당	%	0.0	₩1,226,754	₩0	*장비운전 특별작업수당 적용
	연장근로수당	시간	0.0	₩12,027	₩0	*단가: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805	₩12,027	₩9,682	*단가:시급 × 150% *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 계				₩79,840	
상 여 금		%	0.0	₩102,230	₩0	*단가:기본급 ÷ 12개월
퇴직급여총당금					₩107,098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 × 12개월 ÷ 366일 × 30일 ÷ 12개월
월 평균 인건비					₩1,413,692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총당금

비고)

■ 실 근로시간

- ① 목요일 : 8시간(10:00~18:00) -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 ② 금~일요일 : 8시간(12:30~20:30) - 1시간(휴게시간) = 7시간

■ 기본급 수량산출근거

- ① 366일 - 52일(월요일) - 52일(화요일) - 49일(수요일) - 3일(목~일요일 중 명절) = 210일
 ② 목~일요일 월평균 근무시간 : $(210일 \div 12개월) \times 7시간 = 122.5시간$

■ 유급휴일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$(366일 \div 12개월 \div 7일) \times 7시간 = 30.5시간$

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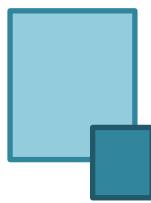
- ① 근로자의 날 및 휴일추가근무
 ② $[1일(근로자의날) + 3일(6/6, 8/15, 10/3)] \div 2.9조교대(29인 \div 10인 = 2.9조) = 1.38일$
 $\rightarrow [1.38일 \div 12개월] \times 7시간 = 0.805시간$

노임단가 임율산출표

[부표 2]

(단위 : 원)

직종	노임단가	1일급	작업시간	기본시급	적용단가 (최저가)
책임자 (소장)	작업반장 (대한건설협회)	₩111,998	8	₩13,999	₩10,149
	기타 공학 품질관리원 (중소기업중앙회)	₩81,194	8	₩10,149	
남미화원	보통인부 (대한건설협회)	₩89,566	8	₩11,195	₩8,018
	단순노무종사원 (중소기업중앙회)	₩64,150	8	₩8,018	
여미화원	보통인부 (대한건설협회)	₩89,566	8	₩11,195	₩8,018
	단순노무종사원 (중소기업중앙회)	₩64,150	8	₩8,018	
<p>주) 1. 통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기관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노임단가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최저 단가를 산출하였다.</p> <p>2.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(2015. 10. 1)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5관 1-나 항(단순용역(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)의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 적용) 및 행정자치부 비정규직 관련 회계통첩(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)의 단순노무 일반용역(일반용역 중 청소, 검침, 시설물 경비, 시설물 관리 등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함)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</p> <p>3.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(2014. 12)에 따라 기본급(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, 일급,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(본봉)), 통상적 수당(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, 생산 장려수당, 자격수당, 가족수당, 근속수당 등))을 포함한다.</p>					



경비 집계표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청소용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

III. 경비집계표

[표 3]

(단위 : 원)

비 목	단위	수량	단 가	금 액	비 고
감 가 상 각 비	식	1	₩15,028	₩15,028	부표 3 참조
보 험 료	식	1	₩4,489,205	₩4,489,205	부표 4 참조
복 리 후 생 비	식	1	₩2,703,079	₩2,703,079	부표 5 참조
유리청소 및 바닥왁스작업비	식	1	₩1,456,496	₩1,456,496	부표 6 참조
합 계				₩8,663,808	

1. 감가상각비 산출명세서

[부표 3]

(단위 : 원)

구 분	규 격	단 위	수 량	단 가	내용 월수	월상각액	적용률	월상각액
1톤트럭	포터 II	대	1	₩13,745,454	60개월	₩229,091	6.56%	₩15,028
소 계								₩15,028
주) 1. 월상각액 : 대상금액 ÷ 내용월수(12개월 × 5년) 2.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5년 기준산정. 3. 단가산출근거 : 1톤트럭 대상금액 : ₩13,090,909 + ₩654,545(취·등록세) = ₩13,745,454 4. 월간 사용횟수를 감안하여 해당비율을 적용하였음. : 2일 ÷ 30.5일 × 100 = 6.56%								

2. 보험료 산출명세서

[부표 4]

(단위 : 원)

보 험 명	대상금액	단 위	수 량	금 액	비 고
보험료 대상금액	₩43,091,717	-	-	₩43,091,717	
산재보험료	₩43,091,717	%	1.7	₩732,559	소요인원 29명에 대한 월 보험료 발생금액
국민건강보험료	₩43,091,717	%	3.035	₩1,307,834	
장기요양보험료	₩1,307,834	%	6.55	₩85,663	
국민연금보험료	₩43,091,717	%	4.5	₩1,939,127	
고용보험료	₩43,091,717	%	0.9	₩387,825	
임금채권보장보험	₩43,091,717	%	0.08	₩34,473	
석면피해구제분담금	₩43,091,717	%	0.004	₩1,724	
소 계				₩4,489,205	

비고)

1. 보험료 대상금액 : 2-1. 보험료 산출명세서 참조

2. 보험료율 산출근거

1) 산재보험료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17/1,000
-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이 관한 법률 제14조(보험료율의 결정)
-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58호

2) 국민건강보험료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 + 상여금+ 제수당) × 3.035/100
-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(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)

3) 노인장기요양보험료

- ①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액 × 6.55/100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)

4) 국민연금보험료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45/1,000
- ② 국민연금법 제88조(연금보험료의 부과. 징수 등)

5) 고용보험료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9/1,000
-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이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고용보험료율)

6) 임금채권보장기금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0.8/1,000
-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(사업주의 부담금)
-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67호

7) 석면피해구제분담금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0.04/1,000
- ②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0.04/1,000 적용

3-1. 월보험료 대상금액 산출명세서

[부표 4-1]

(단위 : 원)

구 분		월급여 [A]	퇴직급여 총당금 [B]	대상금액 [C]=[A]-[B]	인 원 [D]	금 액 [E]=[C]×[D]
소	장	₩2,274,500	₩172,311	₩2,102,189	1인	₩2,102,189
남 미 화 원	조기출근	₩1,866,365	₩141,391	₩1,724,974	3인	₩5,174,922
	사무동, 선수동근무자	₩1,719,168	₩130,240	₩1,588,928	1인	₩1,588,928
여 미 화 원	상근	₩1,615,798	₩122,409	₩1,493,389	8인	₩11,947,112
	상근 (조기출근자)	₩1,757,078	₩133,112	₩1,623,966	3인	₩4,871,898
	상근 (사무동,선수동 근무자)	₩1,641,417	₩124,350	₩1,517,067	2인	₩3,034,134
	비상근	₩1,413,692	₩107,098	₩1,306,594	11인	₩14,372,534
합 계					29인	₩43,091,717

주) 1. 월 보험료 대상금액 = 월급여 - 퇴직급여총당금

4. 복리후생비 산출명세서

[부표 5]

(단위 : 원)

구 분		수 량	인 원	단 가	금 액	월상각액	비 고
작업복	하복-상·하의	연1회	29인	₩27,000	₩783,000	₩65,250	
	동복-상·하의	연1회	29인	₩34,545	₩1,001,805	₩83,484	
급식비	소장	258일	1인	₩4,000	₩1,032,000	₩86,000	
	남미화원	258일	3인	₩4,000	₩3,096,000	₩258,000	
	상근(남) (사무동, 선수동근무자)	258일	1인	₩4,000	₩1,032,000	₩86,000	
	상근	258일	8인	₩4,000	₩8,256,000	₩688,000	
	상근 (조기출근자)	258일	3인	₩4,000	₩3,096,000	₩258,000	
	상근(여) (사무동, 선수동근무자)	258일	2인	₩4,000	₩2,064,000	₩172,000	
	비상근	213일	11인	₩4,000	₩9,372,000	₩781,000	
명절상품권		연3회	29인	₩31,082	₩2,704,134	₩225,345	
소 계						₩2,703,079	
주) 1. 월발생액 : 금액(수량×인원×단가) ÷ 12개월							

5. 유리청소 및 왁스작업비 산출명세서

[부표 6]

(단위 : 원)

구 분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월상각액	비 고
유리격벽청소 (작업반장)	인	30	₩128,798	₩3,863,931	₩321,994	※ 연2회 기준 ※ 수량산출근거 : 5인×3일×2회=30인 ※ 실제소요인력을 기준 으로 산정하였음
바닥왁스청소비용 (보통인부)	인	152	₩89,566	₩13,614,032	₩1,134,502	※ 연2회 기준 ※ 수량산출근거 · 2,3,4층 복도 : 20인×3일×2회=120인 · 사무동 : 8인×2일×2회=32인 · 소계:152인 ※ 실제소요인력을 기준 으로 산정하였음
소 계					₩1,456,496	
주) 1. 월발생액 : 금액(수량×단가) ÷ 12개월 2. 단가산출서 ① 유리격벽청소 = ₩111,998(2015년 하반기 공사부분 작업반장 노임단가 적용) + ₩16,800(15%적용-외곽청소로 인한 수당) = ₩128,798 ② 바닥왁스청소 = ₩89,566(2015년 하반기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)						